# 공동주택관리법



[시행 2024. 10. 25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 (주택건설공급과-입주자대표회의) 044-201-3371 국토교통부 (주택건설공급과-관리비) 044-201-3380 국토교통부 (주택건설공급과-사업자선정) 044-201-3368 국토교통부 (주택건설공급과-하자보수) 044-201-3378 국토교통부 (주택건설공급과-장기수선계획, 행위허가) 044-201-3377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 8. 28., 2015. 12. 29., 2016. 1. 19., 2017. 4.

#### 18., 2019, 4, 23.>

- 1. "공동주택"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.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. 가. 「주택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
  - 나. 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. 「주택법」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
- 2. "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"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,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 다.
  - 가.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  - 나.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
  - 다.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)의 공동주택
  - 라. 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
  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
- 3. "공동주택단지"란「주택법」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.
- 4. "혼합주택단지"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.
- 5. "입주자"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直系尊卑屬)을 말한다.
- 6. "사용자"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(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) 등을 말한다.
- 7. "입주자등"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.
- 8. "입주자대표회의"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.
- 9. "관리규약"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 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.
- 10. "관리주체"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  - 가.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.
  -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
  - 다. 주택관리업자
  - 라. 임대사업자
  - 마. 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」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(시설물 유지·보수·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
법제<del>처 1 기법령정보센터</del>

- 11. "주택관리사보"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12. "주택관리사"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13. "주택관리사등"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.
- 14. "주택관리업"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(業)을 말한다.
- 15. "주택관리업자"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. 16.

삭제 < 2016. 1. 19.>

# 17. 삭제 < 2016. 1. 19.>

- 1. "장기수선계획"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.
- 2. "임대주택"이란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 택을 말한다.
- 3. "임대사업자"란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4조제 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.
- 4. "임차인대표회의"란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 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.
-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「주택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1.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
  - 2.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
  - 3.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
  -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주택법」을 적용 한다.
  -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
  - 이 법을 적용한다.<개정 2015. 8. 28.>

#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

- **제5조(공동주택의 관리방법)**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 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조(자치관리)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(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)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한다. <개정 2019. 4. 23., 2021. 8. 10.>
  - 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 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.